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15. 12. 18.

행정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일자 : 2015년 11월 12일

나. 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 : 2015년 11월 19일

라. 상정일자 : 제192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위원회(2015.12.9)

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재정국장 서종석)

가. 제안이유

- 「지방재정법」 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지급 범위등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, 기타 띄어쓰기 등 법조문을 법령정비 기준에 의거 정비하기 위함.

나. 주요내용

- 사회적경제조직의 정의 명확화(안 제2조제2호)
-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위탁의 범위 규정
(안 제11조제3항)
- 사회적경제활성화사업 실시 근거 마련(안 제14조제2항)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정비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: 김기영)

본 개정 조례안은 「지방재정법」(이하 “법” 이라한다) 개정에 따라 보조금 지출근거를 조례에 구체화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하려는 것으로,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

- 안 제2조는 “사회적경제 조직”의 정의에서 예비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의 정의를 관련법령에 맞게 새롭게 정립하였으며,
- 안 제7조는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의 회의록, 의결서 작성, 위원 위촉 해제 등의 내용을 보완하였고,
- 안 제11조제3항 및 제14조제2항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개정된 “법” 제17조제1항의 개정 취지에 맞게 지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보임.

구 분	현 행	개 정
11조3항	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	위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
14조2항	구축 및 활동을 지원	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

- 다만, “법”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으므로 인건비,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 지출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99 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15. 11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「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」가 제정되어 우리 구 조례의 일부 주요내용을 서울시 조례 내용과 일치시키고,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위탁의 범위와 「지방재정법」 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지급 범위등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, 기타 띄어쓰기 등 법조문을 법령정비 기준에 의거 정비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가. 사회적경제조직의 정의 명확화(안 제2조제2호)

- ‘중앙행정기관의 장’이 지정하는 ‘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’ 추가
- ‘서울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’ 제정에 따라 ‘마을기업’에 대한 정의가 ‘도시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’에 명시되어 개정

나.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위탁의 범위 규정(안 제11조제3항)

- 민간위탁의 범위와 지방보조금의 지급범위 등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

다. 사회적경제활성화사업 실시 근거 마련(안 제14조제2항)

-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사업비 지급 근거 규정 마련

라.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정비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사회적기업 육성법

나.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
다. 협의사항

(1) 규제심사 : 심사실시(대상사무 없음)

(2) 부패영향평가 : 평가실시(의견 있음)

- 제7조(위원회 구성 등)제6항 중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위원 개개인이 제척·기피·회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해촉요건으로 규정할 것을 권고함(의견 반영)

(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평가실시(원안 동의)

라. 기 타

(1) 입법예고(2015.9.03. ~ 9.23. 20일간) 결과 : 의견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가목 중 “서울특별시장”을 “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서울특별시장”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“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”을 “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”으로 “안전행정부장관”을 “행정자치부장관”으로 한다.

제4조의 제목 “(사회적경제조직의 책무)”를 “(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)”로 하고, 제4조 중 “사회적경제조직”을 “사회적경제 조직”으로 한다.

제5조제2항제6호 중 “사회적경제조직”을 “사회적경제 조직”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중 구청장이 위촉한다.”를 “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“과장이 된다.”를 “과장이 되며, 회의록 및 의결서를 작성·관리하여야 한다.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“위원은”을 “위원의 임기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⑥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.

1. 위원이 위원직의 사임의사를 표시할 경우
2. 위원이 질병 또는 품위손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3. 제10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을 해한 경우

제9조제1항 중 “1이상”을 “1 이상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3항 중 “관련”을 “제2항에 따른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적경제 관련”으로, “운영에”를 “위탁사무 처리에”로 한다.

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대하여”를 “대해서”로 한다.

제14조제2항 중 “등을 촉진하기 위한 ‘사회적경제’”를 “등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‘사회적경제’”로, “구축 및 활동을 지원”을 “구축 및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”로 한다.

제20조 중 “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 및 표창 조례」”를 “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」”로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(共有)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 중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로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"사회적경제 조직"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(이하 "구"라 한다)에 소재하고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추구하면서 재화·서비스를 생산, 교환,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을 말한다.</p> <p>가.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<u>서울특별시장이</u>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</p> <p>나. <u>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으로서 안전행정부장관 및 서울특별시장이</u> 선정한 마을기업</p> <p>다. ~ 마. (생 략)</p> <p>3. ~ 7. (생 략)</p> <p>제4조(사회적경제조직의 책무)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<u>사회적경제 조직</u>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성실히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가. ----- ----- <u>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서울특별시장</u> ---</p> <p>나. 「<u>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</u>」 제2조제1항 제9호에 따른 ----- <u>행정자치부장관 및</u> ----- -----</p> <p>다. ~ 마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조(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) ---- ----- <u>사회적경제 조직</u> -----</p>

노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·시행) ① (생략)

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~ 5. (생략)

6. 시와 군·구, 유관 기관, 지역사회,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

7. ~ 9. (생략)

③·④ (생략)

제7조(위원회 구성 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,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한다.

1. ~ 6. (생략)

② (생략)

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.

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공무원과 구의원인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,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-----.

제5조(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·시행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-----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6. -----
-- 사회적경제 조직 -----

7. ~ 9. (현행과 같음)

③·④ (현행과 같음)

제7조(위원회 구성 등) ① -----

----- 중에서
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~ 6. (현행과 같음)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-----,

-----과장이 되며, 회의록 및
의결서를 작성·관리하여야 한다.

④ -----
-----.

위원의 임기는 -----

-----.

⑤ (생략)

⑥ 구청장은 위원이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와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.

제9조(위원회 운영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소집을 발의하였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~ ⑤ (생략)

제11조(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) ①, ② (생략)

③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,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④ (생략)

제12조(기금의 조성, 운용) ① (생략)

⑤ (현행과 같음)

⑥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.

1. 위원이 위원직의 사임의사를 표시할 경우

2. 위원이 질병 또는 품위손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3. 제10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을 해한 경우

제9조(위원회 운영) ① -----

----- 1 이상 -----

-----.

②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11조(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) ①, 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----- 제2항에 따른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적경제 관련 -
- 위탁사무 처리에 -----
-----.

④ (현행과 같음)

제12조(기금의 조성, 운용) ① (현행과 같음)

략)

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다. 다만, 타 기금에서 동일한 용도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용할 수 없다.

1. ~ 4. (생략)

제14조(재정지원 등) ① (생략)

②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, 지역사회와 연대, 지역사회 공헌활동, 공동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한 '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' 구축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.

③ ~ ⑤ (생략)

제20조(포상)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에 이바지한 개인, 단체, 기업 및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행과 같음)

② -----
-----.

----- 대해서 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제14조(재정지원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'사회적경제' ----- 구축 및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--.

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20조(포상) -----

-----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」 -----
-----.